

명칭가곡 수용의 양상과 의미*

임 주 탁**

차 례

- | | |
|-----------------|------------------|
| I. 서론 | III. 명칭가곡 수용의 의미 |
| II. 명칭가곡 수용의 양상 | IV. 결론 |

국문초록

명나라 태종대에 제작된 명칭가곡이 우리나라에 수용된 과정과 논리, 그리고 끼친 영향 등을 살핀 논문이다. 억불숭유를 정책기조로 삼은 조선이 세종대에 이르러 불교를 수용하고 궁궐에까지 사찰을 창건하는 등 종교사상적 측면에서 포용적인 정책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래 특히 신이한 사적을 담은 노래를 제작하는 등 문학 문화사적 측면에서 유가적 합리주의에 배치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그 원인이 명칭가곡을 비롯한 불서의 수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유학을 신봉하는 관료들이 명칭가곡과 같은 불곡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과정에서 종교적 내용보다 이소사대(以小事大)의 원칙을 더 중시하여 수용을 표방하는데, 이는 종교사상에 대한 세종의 포용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단박에 모든 인민의 신앙을 바꿀 수 없다면 비록 이단이라 하더라도 인정하고 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세종은 불교와 도교 등 다양한 중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 국어교육과 교수

교사상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포용 정책은 유학자들로 하여금 부분적인 반발을 사게 했지만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유가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사상을 통합하는 길을 모색하게끔 했다. 그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 한림별곡이다. 명칭가곡의 수용은 또한 신승전을 비롯한 불서들의 수용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유학자들은, 신승전이 명승들이 성(聖)이 되고 신(神)이 되는 까닭을 인민들에게 이해시킬 목적에서 지어졌듯이, 조선 왕조를 연 새로운 왕실의 조상들이 성이 되고 신이 되는 까닭을 이해시킬 목적에서 용비어천가를 지었다. 그에 조응하여 세종은 한문을 깨치지 못하고 한어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인민들이 부처를 존송할 수 있도록 부처가 성이 되고 신이 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사적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월인천강지곡이다. 이렇게 명칭가곡의 수용은 세종대의 통치 방향은 물론 문화 상황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명칭가곡, 불곡, 한림별곡,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세종

I. 서론

이 글은 태종대(1400~1418) 말기에서 세종대(1418~1450) 사이에 이루어진 명칭가곡 수용의 양상과, 그것이 끼친 영향을 살피는 데 목표를 둔다. 명칭가곡(名稱歌曲)은 명나라 태종대(1402~1424)에 지은 불곡(佛曲)이다.¹⁾ 명나라 태종은 즉위 초부터 도연(道衍)을 태자소보(太子少保)로 중용하는 등 승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동시에 다양한 불서를 편찬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불곡(佛曲)을 제작하는 일을 적극 추진했다. 명칭가곡은 명나라 태종 15년(1417, 조선 태종 17년)에 비로소 만들어진 불곡이다.²⁾ 기왕의 불곡처럼 속악을 바탕으로

1) 명나라에서의 불곡의 제작 및 명칭가곡의 제작에 관해서는 『釋鑑稽古略續集』(CBETA 電子佛典 Vol.18); 『古今圖書集成 釋教部語彙考』(CBETA Vol.6)를 참조할 것.

하는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대중적인 전파를 꾀했지만, 노랫말은 사뭇 달랐다. 명칭가곡의 노랫말은 불교의 가르침을 직접 드러낸 것이 아니라 현세불(現世佛) 또는 부처 화신(化身)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디 이름도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 이하 ‘명칭가곡’으로 통일함)이다. 기왕의 불경에서 전하는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의 이름을 뽑아 노래로 만들어 일상적으로 부르게 함으로써 선심(善心)을 기르게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³⁾

명칭가곡은 명나라에서 반포된 해부터 조선에 보내졌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그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조선 태종은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는 정책 기조를 천명했는데, 명칭가곡의 적극적인 수용은 그 정책 기조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명칭가곡은 수용되었고 그 수용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물론 문화 정책과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문학사에서 세종대는 다양한 형태의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다. 명칭가곡

2) 지금 전하는 명칭가곡에 부친 서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쓰인 것이 영락 15년 4월 17일의 것이다. 같은 서문이 영락 17년의 간기를 가지고 있지만, 조선에 이것이 처음 전해진 시기가 영락 15년 12월이므로 처음 이 서문이 쓰인 시기는 영락 15년 4월 17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계명대학교,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명칭가곡의 전문이 소장되어 있다.

3) 그 서문에서 명나라 태종은 “군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천지를 공경하고 조종(祖宗)을 받들며 삼보(三寶)를 존중하고神明(神明)을 공경하며 왕법(王法)을 준수하고 언행을 공손히 하며 만물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널리 몰래 도움 주는 일을 행하면 살아서는 부귀를 누리고 죽어서는 천당에 올라 모든 쾌락을 얻는다”고 전제하고, 명칭가곡을 불러 부처와 그 무수한 현신들을 칭송하고 공덕을 기리면 그들로부터 감응을 받아 “의식을 풍족하게 하고 수명을 길게 하며 죄업을 씻어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명칭가곡은 그 내용은 불교적이지만 그 목적은 종교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序』,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廣陵古籍刻印社, 2000(동국대도서관 소장); 頻伽精舍(연대미상, 계명대도서관 소장))

의 수용은 비단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같은 불교 노래 제작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단적 사유를 담은 노래 또는 음성(淫聲)으로 비판되기도 한 음악에 맞춘 노래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유학을 배운 유신들이 새로운 노래를 짓게 된 것도 그에 대한 반응이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문학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명칭가곡에 대한 이해는 빠트릴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명칭가곡은 그 음악이 이 같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그 수용 자체가 새로운 노래의 제작 등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은 아주 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명칭가곡의 수용에 대한 선행 연구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다루어 사실 확인에만 그치고 말았다. 명칭가곡 수용이 어떤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수용 당대 이후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천착되지 않았던 것이다. 명칭가곡의 수용은 세종대의 문화, 특히 노래 창작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유가적 통치 이념을 천명한 조선이 그 이념과는 다른 사유가 반영된 노래, 그것도 전래하는 레퍼토리가 아닌 새로운 레퍼토리를 궁중과 조정의 음악으로 수용, 전승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을 넘어서는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 글은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리라 기대된다.

II. 명칭가곡 수용의 양상

1. 명칭가곡 수용의 배경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송유역불의 정책 기초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4) 鄭亨愚,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의 輸入과 그 普及·誦習問題」, 『東方學志』 54-56(연세대, 1987), 717~734쪽.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유가적 통치의 기틀을 확립한 세종 대에는 오히려 불교를 숭상하여 궁궐에 불당을 만들고 불서를 간행하는 등 불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찰 혁파로 시작된 태종 대의 억불의 정책 기조가 세종대에 이렇게 무너진 까닭은 어디 있을까? 단지 명나라에서 불교를 신봉하였고 조선이 명나라를 사대했기 때문일까? 사대가 불교 수용과 같은 종교적 선택의 문제에까지 적용되는 원리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송유억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 조선이 명칭가곡을 수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명칭가곡의 수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이후 정책 기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조선은 관료제의 정착을 통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과거를 통한 관료의 선발이었다. 관료는 유가(儒家)의 경전을 주된 교과목으로 하는 학교 기관에서 길러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가의 경전은 수신(修身)에서 평천하(平天下)까지 통치의 방법과 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서적이다. 따라서 유가의 경전을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거쳐 관료가 되는 인재들은 누구나 통치자의 자질을 기르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기 당대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국가 사회의 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르기까지 통치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이론으로나 실천으로 경험하게 된다. 고대국가 수립 이후 관료제의 도입과 유학의 장려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은 무엇보다 국가 질서 체계의 수립과 유지가 무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이 유학의 가르침을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것도 마찬가지로의 이유 때문이다.

그에 비해 불교는 계급적 차별이 현존하는 사회를 포용하는 통치 이념과 원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종교였다. 가르침 자체는 만고의 진리일 수 있지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서 악의 근원을 박

멸할 수 없으며 사회 내의 구성원의 역할이 한결같을 수 있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가르침이 통치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유가적 통치 방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를테면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에 현세적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해답이나 인간 보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는 하여도 그 자체로서 대안적 통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인간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현실적인 논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통치자의 종교가 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유가적 통치 방식까지 배제할 수 없었다. 이른바 불교 국가의 공통 사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는 유교와 공존할 수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에 불교가 도입된 이래 불교와 유교가 공존했던 역사가 길었다.

그런데 왜 조선은 건국 초기에 승유억불의 정책 기초를 천명했을까? 해답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관료제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 경제적 지원이다. 농본 국가에서 관료의 경제적 지원은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사유(私有)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사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토지가 많았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권력의 산물이다. 고려 말기의 토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권력 핵심부로 진출한 세력에 의해 거의 장악되다시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신진 관료에 대한 토지 지배력을 부여하는 일은 순조로울 수 없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 해도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토지를 왕실이나 조정에서 거두어들일 수는 없었다. 승유(崇儒)를 천명했어도 현실적인 난관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억불(抑佛)은 그런 상황에서 조선 왕조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손쉬운 길인 듯 보였다.

고려는 불교를 아울러 숭상한 국가였다. 왕실의 경우, 왕위를 계승하

지 못한 왕자들은 대부분 승직을 받는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토지에 대한 지배력이 부여되었다. 왕실 출신만이 아니라 권력의 기반을 갖고 있는 승려는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를 확보하여 그에 대한 수조(收租) 및 부세(賦稅)의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권리가 고려시대 내내 인정된 데다, 고려 말기 공민왕의 유신(儒臣)에 대한 불신과 불교에 대한 흑신(惑信)은 사찰과 승려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확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신진 관료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과전법(科田法)을 시행한다 해도 그들에게 지배력을 부여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억불 정책은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유효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 억불 정책은 태종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태조대(太祖代, 1392~1398)에는 국왕 자신이 불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설령 억불의 정책 기초를 유지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태종대(1398~1418)의 사정은 달랐다. 무엇보다 국왕 자신이 불교를 신봉하지 않았다. 그런데 태종대의 억불 정책은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토지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불교 세력에게 명나라 왕실의 불교 흑신(惑信)은 조선의 억불 정책에 대응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조선이 사대(事大)를 천명하면서도 대국 명나라가 왕실에서부터 신앙하고 있는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다는 것은 명분으로는 사대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대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 세력은 조선 건국 이전부터 명나라 왕실과의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또 억불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명나라로 망명하는 승려가 늘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명나라에 거주하는 고려 또는 조선의 승려들은 거둬서 명나라가 조선을 압박해 줄 것을 요청한 듯 보인다. 물론 명나라에서 이들의 요청을 적극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다. 종교 문제가 사대의 핵심이 된 적은 역사상 유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나라는 외면적으로는 압박의 형식이 아니라 시혜(施惠)의 형식을

빌려, 역불 정책의 완화를 중용하고 아울러 명칭가곡을 보내 불교에의 감화를 유인하고자 했다.

사대의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빌미로 명나라는 환자(宦者), 처녀(處女), 매, 말, 소 등의 진상을 거듭 요구했고, 태종은 큰 저항 없이 명나라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대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이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가 종교적 선택의 자유마저 강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에서 대대적인 불교 개혁은 태종 5년 11월 21일 의정부에 의해 천명되었는데, 태종 8년 명나라에서는 조희를 온 조선 세자(이제(李禔))의 시종관들에게 황제가 영곡사(靈谷寺)에 거둥하여 지은 찬불시(讚佛詩)를 선사하여 차운하게 하고,⁵⁾ 시종관 일행을 직접 영곡사(靈谷寺)에 들르게 하여 황제가 지은 또 다른 찬불시를 보여주며 이에 속운(俗韻)해서 올리게 한다. 황제의 마음이 숭불(崇佛)에 있음을 조선의 세자를 비롯한 관료들에게 거듭 내비친 것이다.⁶⁾ 불교가 왕조국가의 통치 원리와 이념을 제공한 종교는 아니다. 명나라 또한 한림원을 설치하여 유학을 장려하는 등 유가적 통치 원리와 이념에 충실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황제[태종(太宗) 문황제(文皇帝)/영락제(永樂帝)]의 불교 신봉은 불교 세력까지 끌어들여 강력한 대국의 면모를

5) 명사와 명실록에는 “조선의 세자 이제(李禔)가 귀국할 것을 알리자 임금(명 태종, 성조(成祖))은 친히 시를 지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太宗文皇帝實錄』永樂 6年 春正月 丙子; 『明史』卷 320 列傳 第28 外國 1 朝鮮). 이때의 시가 찬불시(讚佛詩)였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찬불시였을 개연성이 높다.

6) 당시 명나라에서는 호승(胡僧) 갈니마(曷尼摩)를 생불(生佛)이라 일컬었고, 황제는 영곡사에 머물게 하고 있었다(『조선왕조실록』태종 8년 4월 2일(경진)). 세자 일행은 무술일(立春)일에 표를 받들어 방물을 바쳤고, 병술일에 비단 등 하사품을 받았으며, 병자일에 명나라 태종으로부터 친히 지은 시(詩)와 서적(書籍)·필묵 등을 받아 돌아왔다(『太宗文皇帝實錄』永樂 6年 春正月, 『明實錄 太宗實錄』11(영인본), 英美書籍, 1990, 1029쪽, 1033쪽 참조). 이 때 받은 시(詩)가 찬불시였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명나라 태종이 영곡사에 들렀던 사실도 명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교 세력에 의해 수많은 토지가 장악된 조선에서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불교 세력을 수용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시종관 일행이 황제가 지은 찬불시에 대해 차운이나 속운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나라 황제의 숭불은 조선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었음이 분명하다. 조선의 입장에서 사대의 실질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 판가름하기 곤란했을 것이다. 다만 이후 조선에서는 여자와 말을 조공으로 거둬 바침으로써 사대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종교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또한 조선에서도 불교 개혁이 모든 승려와 사찰에 무차별적으로 단행되지는 않았다. 태조가 불교를 신봉했는데 태조 원당인 사찰을 혁파할 수도 없었으며, 또 태조 원당(願堂)만을 인정하고 모든 사찰을 혁파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연경(衍慶)·흥천(興天)·화장(華藏)·신광(神光)·석왕(釋王)·낙산(洛山)·성등(聖燈)·진관(津寬)·상원(上元)·견암(見菴)·관음굴(觀音窟)·회암(檜庵)·반야전(般若殿)·만의(萬義)와 서울의 감로(甘露) 등의 사사(寺社)는 예전대로 하게 하였다.”⁷⁾ 이러한 예외 조치 또한 불교 신봉 여부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별적 수용은 그 과정에서 배제된 사찰의 승려들의 반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불교 혁파를 주장하는 세력과 선별적 수용에서 배제된 불교 세력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국가 사회의 중대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조선에서의 대립과 갈등의 해결에까지 명나라가 적극 간여할 수

7) 『조선왕조실록』 태종 5년 11월 21일(계축). 전자판 『朝鮮王朝實錄』(太祖~世宗) (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식회사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의 번역문을 가져왔다. 원문과 대조하여 번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인용했다. 번역문의 문장이 어색한 곳은 자연스럽게 바꾸었다. 이하 직접 인용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는 없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끊이지 않는 반란을 진압하고 변방을 통합하여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통치 질서가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자 명나라에서는 황제의 숭불 의지를 거듭 조선에 전한다. 조회를 위해 찾아온 조선의 관료들에게 찬불시에 차운하거나 속운하는 수위를 넘어, 이제는 신승전(神僧傳), 위선음צל서(爲善陰鷲書)와 같은 불서(佛書)와, 부처의 현신(現身)들 이름을 일상적으로 불러 불심(佛心)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지은 노래를 만들어 보낸다. 그 노래가 바로 명칭가곡이다.

2. 명칭가곡 수용의 과정

명칭가곡이 처음으로 조선에 보내진 것은 태종 17년(1417) 12월이다. 명나라에서 명칭가곡이 반포된 바로 그 해다. 명나라는 명칭가곡을 보내면서 불교 문제가 사대 문제와 관련되는 중대 사안임을 사신 일행에게 널리 전할 것임을 전달한 듯하다.

노귀산(盧龜山)·원민생(元閔生)·한확(韓確)·김덕장(金德章)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다. 원민생이 아뢰었다. “(……) 11월 초하루 황제가 정전(正殿)에 나와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 100본(本)과 신승전(神僧傳) 300본과 책력(冊曆) 100본을 주시므로 신(臣) 등이 받들고, 초이틀에 출발하여 돌아왔습니다.” (……) 신승전(神僧傳)과 여래명칭가곡(如來名稱歌曲)을 각종(各宗) 사사(寺社)에 반포(頒布)하고 각사(各司)와 여러 경대부(卿大夫)의 집에까지 두루 미치게 했다. 신승전이란 한(漢)나라 이래로 여러 괴탄(怪誕)한 중의 요망한 말과 케이(詭異)한 행적을 모은 것이요, 가곡이란 여러 부처·보살의 이름을 모아 음률(音律)에 맞춘 것이다. 황제가 남녀로 하여금 날마다 외게 하고 이로 인하여 여러 나라에 주었다.⁸⁾

8) 『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12월 20일(신축).

명나라는 신승전⁹⁾과 함께 명칭가곡을 원민생 일행에게 주어 보내기 이전에 일본칙초(日本勅草)와 유구국칙명(琉球國勅命)을 미리 보여 주었다.¹⁰⁾ 조선의 사신 일행에 타국과의 외교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태종은 원민생 일행의 귀국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선이 사대 원칙(事大之禮)에 투철하다면 명나라에서처럼 불교를 숭상하라는 뜻임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명나라는 그 뜻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다. 태종 또한 암시된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불교 개혁을 단행했던 장본인이 한 번 단행한 정책을 뒤엎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사신 일행에게 의아한 반응만 내보였던 것이다.¹¹⁾

이러한 조선의 반응이 명나라에는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명나라는 이듬해(1418) 5월 하성절사 일행을 통해 명칭가곡 300본을 더 보냄으로써 불교에 대한 황제의 의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층 더 뚜렷하게 전달한다.

하성절사(賀聖節使) 김점(金漸)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통사(通事) 김을현(金乙玄)이 아뢰었다.

“황제가 보살여래가곡(菩薩如來歌曲) 300본을 내려주었습니다. 예부

9) 신승전은 명 태종 15년(조선 태종 17년) 1월에 완성되었다(『太宗文皇帝實錄』 永樂 15年 1月 癸巳). 명칭가곡보다 수개월 이전에 완성된 셈이다.

10) 이 기록은 명사(明史)나 명실록(明實錄)에서 찾아볼 수 없다. 명실록(明實錄)에는 원민생이 명 태종 15년 6월에 조하(朝賀)를 하고, 같은 해 7월에 명 태종에게 귀국할 것을 알렸다는 기록만 전할 뿐이다(『太宗文皇帝實錄』 永樂 15年 6月 戊申; 15年 7月 己卯). 원민생 일행에게 명칭가곡과 신승전을 주었다는 기록도 명실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1) 인용문의 말미에 붙은 기사는 당시에 있었던 일이나 평가가 아니라 태종실록을 수찬(修撰)할 시기에 사관이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명칭가곡이 이 때 바로 조선에 반포되었다면 반포 문제를 둘러싼 이후의 논의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신승전의 서문은 명나라 태종이 쓴 것인데 이에 대해 바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승전의 서문의 내용은 세종실록 수찬 사관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다. 서문은 각주 60)에 인용했다.

상서가 김점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이 가곡은 여러 나라에 반포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너희 조선(朝鮮)이 예의(禮義)의 나라이고, 또 전하를 경애(敬愛)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려주는 것이다. 이른바 천리에 아모(鵞毛, 거위 털)를 보내는 것인데, 물건은 가벼우나 사람의 뜻은 무거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¹²⁾

김을현의 말처럼 명나라가 조선에만 명칭가곡을 보냈는지도 역시 분명하지 않다. 명나라 예부상서의 말은 앞의 인용문에서 주변 여러 나라에 보냈다고 한 것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비록 앞의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태종실록이 편찬되는 시점에서 덧붙여진 것이라 해도, 명칭가곡이 조선에만 보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¹³⁾ 다만 명칭가곡 100본을 보낸 지 불과 다섯 달 뒤에 명나라에서 다시금 300본을 더 보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선이 사대의 예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또 황제가 조선 국왕에 대해 특별히 경애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내려주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명칭가곡에 대한 조선의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했다.

이렇게 명나라에서 거듭 명칭가곡을 보내자 태종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자칫 안정적인 관계로 정착되어 가던 명나라와의 대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가졌음 직하다.¹⁴⁾ 바로 이 시점에서 태종은 세종에게 전위할 뜻을 구체화하고 사신을 보내 명칭가곡을 보내준 데 대해 사례하고 아울러 세자 교체 책봉 승인을 구한다.¹⁵⁾

12) 『조선왕조실록』 태종 18년 5월 19일(무진).

13) 만수성절(萬壽聖節)을 축하하러 파견된 김점 일행이 조하(朝賀)를 한 것은 명나라 태종 16년 4월이다(『太宗文皇帝實錄 永樂 16年 夏4月 乙未). 하지만 명실록에는 명나라에서 김점 일행에게 명칭가곡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다.

14) 명나라는 이 무렵 수도를 북경으로 옮겨 조선에 한층 더 가까이 있었다. 수도의 이전은 조선으로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진 듯한데, 이후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 예는 한층 더 두터웠다. 그에 따라 명나라 조정에서도 조선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감히 부러워하지 못할(他國不敢望也)” 정도로 더 많은 예우를 해 주었다고 한다. 『明史』 卷320 列傳 第28 外國 1 朝鮮 成祖 16年 참조.

그리고 같은 해(1418) 8월 11일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명칭가곡 처리 문제를 전면에서 대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내보인다. 명나라 황제의 의지가 분명해진 만큼 명칭가곡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국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수용 의사를 천명할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미온적인 태도만을 고수하기도 한층 더 어려워졌다. 명칭가곡 300본을 받아온 장본인들의 입장에서조차 명나라 황제의 의중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성절사 김점은 명칭가곡을 속악(俗樂)과 교주(交奏)하여 중국 사신에게 들려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참찬(參贊) 김점(金漸)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황제가 명칭가곡(名稱歌曲)을 주었사오니, 청컨대 속악(俗樂)과 섞어 연주하여, 중국 사신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의 말이,

“그저 높여 두는 것은 가하거니와, 하필 교주할 것이야 있겠느냐. 비록 교주한다 하더라도 성음(聲音)이 다르니, 사신이 반드시 이해할 수도 없을 터이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고, 윤허하지 않았으나 뒤에 사신이 왔을 때에는 명하여 교주하게 하였다.¹⁵⁾

명칭가곡을 언제 속악과 교주하게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기록은 이후 태종의 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아울러 시사한다. 명칭가곡을 보내준 데 대해 하례하면서 세자 교체 책봉을 요청함으로써 태종은 명나라에서 두 가지 문제를 연관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 조선의 현안 문제를 조선의 의지대로 승인 받은 다음에

15) 『조선왕조실록』 태종 18년 6월 9일(무자).

16) 『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8월 20일(정유).

야 명칭가곡 문제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에서는 세자 교체 책봉을 승인하기 위해 파견한 사신 일행을 통해 이제는 명칭가곡 1,000본을 더 보내고,¹⁷⁾ 곧이어 세종을 조선 국왕으로 책봉하고¹⁸⁾ 이어서 중관(中官) 황엄(黃儼)을 통해 위선음즐서 1질을 보냄으로써¹⁹⁾ 그동안 신승전을 비롯한 불서와 명칭가곡을 보낸 것이 황제 자신의 뜻이었음을 분명하게 전한다. 태종은 물론 세종도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압박이 행사된 것이다.

이러한 압박에 대해 이미 상황이 된 태종은 명칭가곡을 관현에 올릴 생각도 가지게 된다. 새로 명칭가곡 1,000본을 가져오는 사신 일행을 수행했던 박신(朴信) 등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태종은 명칭가곡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게 된 것이다.

상왕[태종]이 임금과 더불어 주연(酒宴)을 베풀어 박신 등을 위로하였다. (……)

박신이 (……) 또 아뢰기를,

“중국의 부로(父老)들은 모두 명칭가곡(名稱歌曲)을 부르고 궁중의 사람들도 또한 이 곡을 부르더이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지신사(知申事)가 이 일을 관장하여 공인(工人)과 기생(妓生)으로 하

17) 『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9월 4일(신해). 이 기사 역시 명사나 명실록에 전하지 않는다.

18) 조선 국왕 이방원이 배신 심온(沈溫) 등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후임자를 세워 준 은혜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또 나이 이미 노쇠하여 후임자 도(禱)로 하여금 국사를 다스리게 해 달라고 했다. 그 요청에 따라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 한확(韓確)을 정사(正使)로 삼고 홍로시승(鴻臚寺丞) 유천(劉泉)을 부사(副使)로 삼아 조서를 주어 가서 도(禱)를 조선 국왕에 봉(封)하도록 했다(『太宗文皇帝實錄』 永樂 16年 冬10月 壬寅).

19) 명나라 태종이 중관(中官) 황엄(黃儼)을 조선 사신으로 파견할 때 위선음즐서(爲善陰鷺書) 1질을 주었다는 기록이 전한다(『太宗文皇帝實錄』 永樂 16年 6月 辛巳).

여금 익히게 하여 중국 사신에게 들려줄 것이며, 맹판서(孟判書, 맹사성(孟思誠))가 평소에 음률(音律)을 아니 그 곡조(曲調)가 진작(眞勺)에 합하는 것을 뽑아라.”

고 하였다. (진작(眞勺)은 속악(俗樂) 곡조의 이름이다.)²⁰⁾

태종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신들에게는 아주 큰 불안 요소가 되었고, 따라서 명칭가곡을 받아들인 당사자인 김점, 박신이 연거푸 명칭가곡 수용을 중용한 것이다. 이에 태종은 이 기록에서와 같이 명칭가곡을 공인과 기녀들에게 익히게 하고, 또 그 곡조 가운데 속악의 하나인 진작(眞勺)에 부합하는 것을 고르게 함으로써 속악과 교주하게 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²¹⁾

하지만 태종의 생각은 오락가락했다. 곧이어 다음 기사에서와 같이 세종에게 선지(宣旨)를 전하여 명칭가곡을 관현(管絃)에 올리지 말 것과 중국 사신이 드나드는 지역에 국한하여 반포하게 할 것을 지시한다.

임금이 선지(宣旨)를 받들어, 명칭가곡(名稱歌曲)은 관현(管絃)에 올리지 말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유후사(留後司)와 경기도·황해도·평안도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사신이 지나오는 주(州)·군(郡)의 승도(僧徒)로 하여금 이를 외어 익히게 하라고 하였다.²²⁾

태종의 전위는 어찌면 명칭가곡 수용 여부를 둘러싼 난관을 타개하는 길로 선택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위로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세종 또한 명칭가곡 수용 문제에서 태종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피력해 오고 있었다. 비록 세종이 수용 의사가 있었다 해도

20) 『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12월 26일(신축).

21) 진작은 후진진작, 북전으로도 불리는 것으로서 충혜왕이 후전 곧 북전에서 ‘악소배(惡少輩)’들과 어울려 놀 때 지은 속악이다. 이 속악이 태종대에도 계속 군신상락(君臣相樂)의 레퍼토리로 전승되고 있었음을 이 기록과 다음 관련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2) 『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12월 26일(신축).

왕이 되자마자 부왕과는 다른 의견을 먼저 내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태종은 세종을 대신해서 명칭가곡을 수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태종이 맹사성(孟思誠)으로 하여금 진작에 부합하는 곡조를 고르라는 명을 내렸는데도 다시 관현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한 데에는 진작에 대한 맹사성의 부정적인 인식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상왕은 맹사성·변계량·허조 등에게 말하기를,
“후전진작(後殿眞勺)은 그 곡조는 좋지만, 가사만은 듣고 싶지 않다.”
고 하니, 맹사성 등은 아뢰기를,
“전하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금 악부에서 그 곡조만을 쓰고 그 가사는 쓰지 않습니다. 진작(眞勺)은 만조(慢調)·평조(平調)·삭조(數調)가 있는데, 고려 충혜왕(忠惠王)이 자못 음탕한 노래를 좋아하여, 총애하는 측근들과 더불어 후전에 앉아서 새로운 가락으로 노래를 지어 스스로 즐기니, 그 시대 사람들이 후전진작이라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 가사뿐만 아니오라, 곡조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고 하였다.²³⁾

진작은 신년 하례식 이후의 잔치 자리에서 군신상락(君臣相樂)의 음악으로 연주되었던 모양이다. 또 그 자리에서 태종은 앞서의 명을 떠올리며 맹사성에게 진작에 대한 자신의 의견, 즉 곡조는 좋으나 노랫말은 싫다는 의견을 밝힌다. 그에 더하여 맹사성은 진작이 노랫말만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역사적 문맥을 아울러 고려할 때 곡조 또한 그런 잔치마당에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명칭가곡의 문체가 이미 제한적인 수용으로 방향이 결정된 만큼 명칭가곡과 교주하는 속악으로 고려되었던 진작에 대한 의견이 이 자리에서는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진작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명칭가곡을 관현에 올리는 일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23)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월 1일(병오).

명나라 또한 대외적으로는 유가적 통치 기조를 유지했지만 모든 종교를 배제하기보다는 포용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명나라가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조선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억불(抑佛)을 정책 기조로 천명하고 승려와 사찰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명나라는 종교 문제까지 외교 문제와 결부시켜 조선의 억불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그 한 가운데에 명칭가곡이 가로 놓였다. 다른 불서들이야 간직하거나 읽게 하면 그만일 수 있지만 명칭가곡은 노래요 음악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를 조선에 빈번하게 드나드는 명나라 사신들이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태종과 세종은 유신들과 많은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논쟁은 일차적으로 사대(事大) 원칙에 따른 황제 섬김의 차원에서 일단락되고, 명칭가곡은 서울과 명나라 사신들의 오가는 지역의 사찰에 보급하여 암송하는 수준에서 수용된 듯하다.

3. 명칭가곡 수용의 논리

명칭가곡의 수용 문제가 사대 문제와 결부되면서 제한적 수용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억불 기조를 지지하는 측은 물론 불교 수용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전자 측에는 불교 특히 사찰 개혁을 통한 토지 개혁 작업의 단호한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고, 후자 측에서는 왕실과 조정이 배제된 궁여지책일 뿐 불교의 전면적 수용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만은 억불 기조에 반대하는 쪽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상왕 태종과 세종이 동참한 잔치 자리에서 정역(鄭易)은 사대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명칭가곡을 포함한 불서들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촉구한다.

상왕과 임금의 낙천정에 거둥하여 술자리를 벌이고 경녕군, 정역, 홍여방을 위로하였는데, 조연·이화영·조말생·이명덕·홍부·원숙 등이

입시하였다. 정역이 계하기를,

“황제가 지극히 독실하게 불도(佛道)를 숭봉하니, 청컨대 황제가 일찍이 하사한 명칭가곡(名稱歌曲) 등 불서를 중국의 예에 의하여, 입시로 누각을 일으켜 간직하고, 또 외위 읽게 하여 존경하는 뜻을 표시하십시오.”

하고, 재삼 요청하므로, 상왕이 말하기를,

“경의 말은 옳으나, 거짓으로 높이는 것은 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 중에 상서로운 것이 있으면 시가를 짓고 관현(管絃)에 올려서 성덕(聖德)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임금의 말하기를,

“거짓으로 높이는 것은 속이는 것이니, 어찌 감히 거짓으로 하겠소.” 하였다.²⁴⁾

하지만 이 시기 태종과 세종의 명칭가곡에 대한 입장은 불교 수용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정역의 거듭된 건의는 묵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묵살은 결과적으로 태종과 세종의 명칭가곡 수용의 참뜻이 무엇인지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게 국왕의 참뜻이 드러나자 명칭가곡의 수용을 지켜보던 승려들 가운데 중국으로 도망하여 조선이 겉으로는 사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황제가 숭상하는 불교를 여전히 억제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태종과 세종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사대의 논리를 앞세워 불서와 명칭가곡 수용의 문제를 유신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매듭지으려 했던 기왕의 해결 방식에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세종으로부터 이 사건을 보고 받은 상왕 태종은 먼저 고려 말기의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사건에 비견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그리고 즉위 초 어떤 중 하나가 명나라에 도망하여 상당군(上堂君) 사건을 고자질하여 곤혹스러웠던 사건을 아울러 떠올리며 한편으로는 중들이 나라 밖으로 도망하는 일을 방지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명나라가 황제부터

24)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2월 8일(무인).

불교를 혁신하는 데 조선은 그 반대로 사찰을 혁파하고 있어 중들의 불만이 당연히 예견되는 일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가곡에 대한 앞서의 대책을 제대로 시행할 것과 권도(權道)로써 사찰에 대한 배려를 더해 줄 것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더 강구토록 한다.

“(……) 지금 황제가 부도(浮屠)를 신봉하는 것이 소량(蕭梁)보다 더 심하여, 명칭가곡을 외우는 소리가 천하에 퍼져 있고, 공화(空花)와 불상(佛像)의 상서를 그린 그림이 파다하여, 일시에 풍습이 쏠려서 미연(靡然)히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이미 사사(寺社)의 전토와 백성을 혁파하여 겨우 열에 하나를 남기고, 이번에 또 절의 노비를 다 없었으니, 비록 그들이 자취(自取)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 원망이 없겠는가. 이들이 이미 희망을 잃었고, 또 황제가 불도를 숭상한다는 것을 들었으니, 반드시 도망하여 중국에 들어가 말을 꾸며서 참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황제가 숭상하고 신봉함이 저와 같은데, 우리나라의 혁파함이 이와 같음에랴. 중들이 여기서 도망하여 저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다. 옛날 사람도 때에 따라 변고(變故)를 제압하기 위하여 권도(權道)로 임시변통(臨時變通)하는 일이 있었으니, 지금 중들에게 스스로 위안하고 기쁘게 하는 마음을 열어 주기 위하여, 속히 서북면(西北面)과 황해도 등 사신이 내왕하는 곳에 중과 늙은이들을 모아서 황제가 하사한 명칭가곡과 위선음즐(爲善陰鷲) 따위를 항상 읽고 외우게 하며, 또 황제가 숭상하여 그 값을 얻고 상서로운 일이 여러 번 나타난 모양을 찬하하는 시와 노래를 지어서 기생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리하여 명나라 사신이 와서, 연도(沿道)를 지날 때에 경을 외우는 자가 있고, 연회에서 가무할 때에 덕을 칭송(稱誦)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황제가 듣고 반드시 우리나라가 황제의 마음을 본받는다 하여 기뻐할 것이니, 비록 도망하여 들어가 참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말이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자복사(慈福寺)의 전지(田地)를 중들이 모이는 곳에 이속시켜 그들의 마음을 편케 하고자 한다. 이것은 과인이 불씨의 화복설(禍福說)을 겁내서가 아니요, 또 천자가 불교를 배척한다 하여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치겠느냐마는, 그러나 지금의 권도로서는 이렇게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너희들도 어찌 모르겠느냐. 변계량·허조 및 3의정과 더불어 비밀히 논의하고 충

분히 계획하여, 주상에게 아뢰어 과인에게 전달하게 하라.”
하였다.²⁵⁾

태종은 명칭가곡의 수용만이 아니라 불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권도(權道)”에서 찾고 있다. 왕도(王道)로써 도망간 승려들을 붙잡아 와서 처벌하고 사찰을 혁파해야 마땅하지만 왕실에서부터 불교를 흑신하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파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내세워 불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 교서에는 또한 조선의 역불이 자칫 명나라의 물리적 압력 행사로 가시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물론 종교 문제 때문에 명나라가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불안감이 제기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태종 또한 일정하게 공감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언급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의 교서가 내려지자 변계량, 허조, 그리고 3정승 등은 사건을 처리하는 정책을 조금씩 다르게 제시한다.²⁶⁾ 우선 변계량과 허조는 불경을 외고 부처를 숭상하는 일은 당연히 거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노자(奴子)를 돌려주는 문제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다. 변계량은 노자를 돌려주어서 중들의 마음을 편케 하고, 양계(兩界)에 엄령(嚴令)을 내려 중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고, 명나라에다 도망해 들어간 중들을 돌려보내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비해, 허조는 노자를 돌려줄 수 없지만 서울의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들이 거의 모두 양반 자제라 이들이 손수 나무를 지고 물을 길는다면 큰 원성을 살 수 있으므로 얼마만큼의 노자를 돌려주어 승려들의 마음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정현은 중들과 부모(父老)에게 가곡을 외우게 하고, 또 노비를 줄 만한 사찰에는 헤아려 주어야

25)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2월 10일(무인).

26) 위와 같은 곳.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한편 박은과 이원은 황업이 동제불상(銅製佛像)을 가져갈 때 상왕(태종)이 부처에게 절하지 않았던 일을 황제에게 아뢰어 조선에서 불도(佛道)를 믿지 않는 사실을 황제가 이미 알았을 터이므로 비록 참조하는 이가 있어도 황제가 곧이듣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명칭가곡과 같은 책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승려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박은은 또한 서울 안에 있는, 태조가 창건한 흥천(興天)·흥덕(興德)·흥복사(興福寺)에는 섶을 질 종을 헤아려 주되, 승록사(僧錄司)에서 맡아서 윤번제로 바꿔 서게 하고, 또 자복사의 전토를 혁파하여 흥천사 등과 지방의 청정한 사찰에 이속시켜 그들의 생계를 돕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에 비해 이원은 서울과 지방의 사찰에 노자를 줄 수는 없지만, 태종 7년에 지정한 자복사²⁷⁾의 전토를 본래의 사찰들에 이속시켜 주고, 만약 서울에 머물러

27) 자복사는 태종 7년에 지정한 사찰이다. 그 목록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명찰(名刹)로써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지난 해에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이 도리어 태거(汰去)하는 예에 들고, 망하여 폐지된 사사(寺社)에 주지(住持)를 차하(差下)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승도(僧徒)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산수(山水) 좋은 곳의 대가람(大伽藍)을 택하여 망하여 폐지된 사원(寺院)에 대신한다면, 거의 승도들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名刹)로 대신하였는데, 조계종(曹溪宗)에 양주(梁州)의 통도사(通度寺)·송생(松生)의 쌍암사(雙巖寺)·창녕(昌寧)의 연화사(蓮花寺)·지평(砥坪)의 보리갑사(菩提岬寺)·의성(義城)의 빙산사(氷山寺)·영주(永州)의 정각사(鼎覺寺)·언양(彦陽)의 석남사(石南寺)·의흥(義興)의 인각사(麟角寺)·장흥(長興)의 가지사(迦智寺)·낙안(樂安)의 징광사(澄光寺)·곡성(谷城)의 동리사(桐裏寺)·감음(減陰)의 영각사(靈覺寺)·군위(軍威)의 법주사(法住寺)·기천(基川)의 정림사(淨林寺)·영암(靈巖)의 도갑사(道岬寺)·영춘(永春)의 덕천사(德泉寺)·남양(南陽)의 홍법사(弘法寺)·인동(仁同)의 가림사(嘉林寺)·산음(山陰)의 지곡사(地谷寺)·옥천(沃川)의 지록사(智勒寺)·담진(耽津)의 만덕사(萬德寺)·청양(靑陽)의 장곡사(長谷寺)·직산

있기 어려워서 지방 여러 사찰에 살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욕망을 들 어주어 지방에 살게 하고, 서울 안 사찰은 창고나 학교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²⁸⁾

명칭가곡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태종의 기왕의 방책을 수용하는 데

(稷山)의 천흥사(天興寺)·안성(安城)의 석남사(石南寺)이고, 천태종(天台宗)에 충주(忠州)의 엄정사(嚴正寺)·초계(草溪)의 백암사(白巖寺)·태산(泰山)의 흥룡사(興龍寺)·정산(定山)의 계봉사(鷄鳳寺)·영평(永平)의 백운사(白雲寺)·광주(廣州)의 청계사(淸溪寺)·영해(寧海)의 우장사(雨長寺)·대구(大丘)의 용천사(龍泉寺)·도강(道康)의 무위사(無爲寺)·운봉(雲峰)의 원수사(原水寺)·대흥(大興)의 송림사(松林寺)·문화(文化)의 구업사(區業寺)·김산(金山)의 진흥사(眞興寺)·무안(務安)의 대굴사(大寺)·장사(長沙)의 선운사(禪雲寺)·제주(堤州)의 장락사(長樂寺)·용구(龍駒)의 서봉사(瑞峰寺)이고, 화엄종(華嚴宗)에 장흥(長興)의 금장사(金藏寺)·밀양(密陽)의 엄광사(嚴光寺)·원주(原州)의 법천사(法泉寺)·청주(淸州)의 원흥사(原興寺)·의창(義昌)의 웅신사(熊神寺)·강화(江華)의 전향사(香香寺)·양주(襄州)의 성불사(成佛寺)·안변(安邊)의 비사사(毗沙寺)·순천(順天)의 향림사(香林寺)·청도(淸道)의 칠엽사(七葉寺)·신령(新寧)의 공덕사(功德寺)이고, 자은종(慈恩宗)에 승령(僧嶺)의 관음사(觀音寺)·양주(楊州)의 신혈사(神穴寺)·개령(開寧)의 사자사(獅子寺)·양근(楊根)의 백암사(白巖寺)·남포(藍浦)의 성주사(聖住寺)·임주(林州)의 보광사(普光寺)·의령(宜寧)의 웅인사(熊仁寺)·하동(河東)의 양경사(陽景寺)·능성(綾城)의 공림사(公林寺)·봉주(鳳州)의 성불사(成佛寺)·여흥(驪興)의 신이사(神異寺)·김해(金海)의 감로사(甘露寺)·선주(善州)의 원흥사(原興寺)·함양(咸陽)의 엄천사(嚴川寺)·수원(水原)의 창성사(彰聖寺)·진주(晋州)의 법륜사(法輪寺)·광주(光州)의 진국사(鎭國寺)이고, 중신종(中神宗)에 임실(任實)의 진구사(珍丘寺)·함흥(咸興)의 군니사(君尼寺)·아주(牙州)의 동림사(桐林寺)·청주(淸州)의 보경사(普慶寺)·봉화(奉化)의 태자사(太子寺)·고성(固城)의 법천사(法泉寺)·배주(白州)의 건불사(見佛寺)·익주(益州)의 미륵사(彌勒寺)이고, 충남종(淸南宗)에 강음(江陰)의 천신사(天神寺)·임진(臨津)의 창화사(昌和寺)·삼척(三陟)의 삼화사(三和寺)·화순(和順)의 만연사(萬淵寺)·나주(羅州)의 보광사(普光寺)·창평(昌平)의 서봉사(瑞峰寺)·인제(麟蹄)의 현고사(玄高寺)·계림(鷄林)의 천왕사(天王寺)이고, 시흥종(始興宗)에 연주(漣州)의 오봉사(五峰寺)·연풍(連)의 하거사(霞居寺)·고흥(高興)의 적조사(寂照寺)이다. 성석린(成石璘)이 본래 부처에게 아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청이 있었는데, 식자(識者)들이 비난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 12월 2일(신사)

28)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2월 10일(무인).

동의했으니만큼, 태종은 사찰 노비 문제에 대해서 “노자(奴子)를 승록사에 이속시켜 각 절에 운번으로 돌리자는” 박은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조에다 중들의 자원(自願)하는 사목(事目)을 만들 것을 지시한다.²⁹⁾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찰과 승려에 대한 배려를 더해 주자는 요지다. 명칭가곡을 제한적으로 수용했지만, 그에 대한 배려가 사찰과 승려에 대한 배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후한 형편이었다. 명칭가곡의 수용은 무엇보다 황제에 대한 배려인 만큼 불교에 대한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명칭가곡에 대한 조치 또한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한 사정은 사찰 노비에 대한 처결이 있는 지 이틀 뒤에 예조에서 다음과 같은 계문을 올린 데서 알 수 있다.

경연에 나아갔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반포한 여러 부처와 여래의 명칭가곡을 외우는 일은 일찍이 서울과 지방의 절에 공문을 띄웠으나, 지금 혹은 그대로 실시하고 혹은 견어치 왔습니다. 서울 안 각 종(宗)은 승록사에서, 지방 각 사찰은 유후사(留後司)와 여러 도의 감사가 조사하여 (사찰[四節]의) 마지막 달마다 외우고 익힌 일과를 장부에 적고, 세초(歲抄) 때 예조에 전보하게 하여 검거하는 증거로 삼고, 권선서(勸善書)와 음줄서(陰書)·신승전(神僧傳)은 모두 잘 간직하게 하여, 만약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또 승과에 응시하려는 중은 유생의 문공가례(文公家禮)를 강하는 예에 의거하여 능히 명칭가곡을 외우는 자만 응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좃았다.³⁰⁾

불교 수용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대 원칙에 따른 황제 섬김의 논리로 명칭가곡과 불서들을 존송한다는 것이 태종과 이 의론에 참여한 관

29)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2월 10일(무인).

30)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2월 12일(임오).

료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널리 공감되면서 이후 황제가 새로 명칭가곡을 보내왔을 때에도 수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³¹⁾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변계량, 허조와 같이 불교를 숭상하는 것 또한 사대 원칙에 의하면 마땅한 이치라는 논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이원과 같이 여전히 불교 자체는 물론 불교와 사대 문제를 연관 짓는 논리 자체를 부정하는 이도 있었지만, 명칭가곡을 수용하고 불서들을 존중하면서 불교는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사대라는 주장에 한층 더 많은 힘이 실린 듯하다. 명나라 황제가 내린 명칭가곡과 불서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신들로서는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나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명칭가곡의 수용은 결국 불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변화는 곧바로 나타났다. 변계량(卞季良)은 경녕군(敬寧君)이 새로 명칭가곡을 받아들인 직후에 하성명사(賀聖明詞)를 지었는데, 이 노랫말에는 황제의 덕화에 대한 부처의 감응을 칭송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세종은 이 노랫말에 관현으로 소리를 맞추게 했다.³²⁾ 그리고 경녕군이 받아들인 명칭가곡과 음절서는 앞서의 결정되는 달리 서울과 각 도의 사찰에 두루 반포되었다.³³⁾ 반포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공식적인 반발은 없었던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이후 세종의 통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명칭가곡 수용 문제가 일단락된 듯하지만³⁴⁾ 그것이 이제는 불교 수용의 문제로 전면

31) 경녕군 이비가 황제가 하사한 양 4백 60마리, 음즐서 22궤(櫃), 명칭가곡 30궤, 꿀[蜜]에 담근 용안(龍眼) 2항아리, 꿀에 담근 여자(荔枝, 타래붓꽃) 2항아리, 담근 호초(胡椒) 2항아리 등의 물품을 올렸다(『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2월 18일(무자)).

32)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2월 26일(병신).

33) 『조선왕조실록』 세종 2년 4월 3일(신축).

34) 다음 기록은 명나라에서 또 한 차례 명칭가곡을 보내왔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정형우의 지적처럼 세종 즉위 초까지 보내온 것 중 일부를 다시 반

부각될 조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Ⅲ. 명칭가곡 수용의 의미

1. 포용적인 종교(사상) 정책과 한림별곡의 재인식

명칭가곡 수용의 문제가 일단락될 무렵에 세종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시발은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 복을 빌며³⁵⁾ 대비(大妃)의 병환을 치유하는 기능을 불교와 사찰이 일정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듯하다.³⁶⁾ 하지만 세종의 불교에 대한 생각은 명칭가곡 수용 문제로 태종과

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鄭亨愚,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의 輸入과 그 普及·誦習問題, 『東方學志』 54-56(연세대, 1987), 721쪽 참조).

황제가 내려 준 음줄서(陰櫛書) 4백 41벌[件]을 각사와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고, 명칭가곡(名稱歌曲) 1백 35벌을 선·교(禪敎) 양종(兩宗)에 나누어 주어 이를 간직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6년 5월 25일(신축))

35)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을 개경사에 보내어 약사여래(藥師如來)에 기도하고, 길창군(吉昌君) 권규(權)를 소격전(昭格殿)에 가서 북두칠성에 초제(醮祭)하고, 사알(司調)·사약(司)을 나누어 보내어 두루 송악(松嶽)·백악(白嶽)·감악(紺嶽)·양주 성황(楊州城隍)의 신에 기도하고, 저녁에 소경 중[盲僧] 7인을 불러 모아 삼십품 도량(三十品道場)을 낙천정 안뜰에 배설하고, 임금 이 수라도 진여하지 아니하고 침소에도 들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년 6월 1일(무술).

36) 임금과 양녕·효령이 대비를 모시고 개경사에 가서 피병(避病)할 새, 술사둔갑법(術士遁甲法)을 써서 시위를 다 물리치고 밤에 환관 2인, 시녀(侍女) 5인, 내노(內奴) 14인만 데리고 대비를 견여(肩輿)로 모시어 곧 개경사로 향하니, 밤이 이미 삼경[三鼓]이라, 절에 가까이 이르러 임금이 다만 한 사람만 데리고 먼저 본사(本寺)에 가서 있을 방을 깨끗이 쓸고 돌아와, 대비를 맞아 절에 머문 지 나흘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낙천정 시위를 평상과 같이 하니, 안뜰에서 그 향방을 알지 못하였다. 임금이 친히 약사여래에 가 정성껏 부지런히 불공하고 중에게 시식하되, 병세는 오히려 감하지 아니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년 6월 6일(계묘).

함께 고민할 때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그 진전은 태종 사후 점점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명칭가곡과 불서의 수용이 불교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사대 원칙에 따른 황제 섬김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불교 세력들은 태종대에 적극 추진되었던 사찰 혁파 사업의 추진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때문에 사헌부 대사헌 하연(河演)은 불교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유후사 한 군데와 각도에 서너 군데 사찰만 남기고 모두 혁파하며 승과(僧科)를 없애고 승록사까지도 없앨 것을 건의한다.³⁷⁾ 그리고 그것이 승도(僧道)를 오히려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세종은 “개혁하여도 점진적으로 해야 하며, 사사(寺社)는 도태시킬지언정 승선(僧選)·승비(僧批)·승록(僧錄)의 세 가지 일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허조(許稠)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佛法)을 이미 이단(異端)이라 하면 그것이 나라에 이익이 없는 것도 필연적이거나 이 법이 세상에 행한 지가 오래 되었다. 어떻게 사람마다 그것이 이단(異端)이어서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일깨워 주겠는가. 나도 또한 급작스럽게 개혁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하여 불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한다.³⁸⁾

세종의 포용적 태도는 비단 불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역시 발단은 대비(大妃)의 병환 치유를 위한 기복(祈福) 행위에서 마련된 듯하다. 그 사정은 다음 두 기사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낙천정에 나아가 대비께 뵈옵고, 드디어 머물러 병석에 모시고 환관 김용기(金龍奇)를 개경사(開慶寺)에 보내어 관음(觀音)께 기도하고, 인하여 중들에게 시식(施食)하였다.³⁹⁾

37) 『조선왕조실록』 세종 6년 2월 7일(계축).

38) 이상 직접 인용은 『조선왕조실록』 세종 6년 2월 7일(계축)의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39) 『조선왕조실록』 세종 2년 5월 29일(병신).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을 개경사(開慶寺)에 보내어 약사여래(藥師如來)에 기도하고, 길창군(吉昌君) 권규(權)를 소격전(昭格殿)에 가서 북두칠성에 초제(醮祭)하고, 사알(司謁)·사약(司約)을 나누어 보내어 두루 송악(松嶽)·백악(白嶽)·감악(紺嶽)·양주 성황(楊州城隍)의 신에 기도하고, 저녁에 소경 중[盲僧] 7인을 불러 모아 삼십품도량(三十品道場)을 낙천정 안뜰에 배설하고, 임금이 수라도 진어하지 아니하고 침소에도 들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였다.⁴⁰⁾

앞의 것은 불교, 뒤의 것은 도교와 불교의 힘을 빌려 대비의 병환을 낫도록 할 요량으로 취해진 것이다. 명칭가곡에 대한 세종의 일관된 태도 가운데 하나가 실질과 다른 외형을 갖추어 황제의 명을 수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종이 대비의 병환을 낫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행위는 내면의 불교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태종이 회암사 등을 유지하고 갖가지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부왕인 태조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유가적 통치 이념의 근간이 되는 효(孝)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세종이 부처를 섬기고 부처에게 기도하는 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불도량 이외의 도교와 산천 신명에 대한 배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앙 대상이 같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유가적 사유 체계를 설득을 통해 가지게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불교의 전면 혁파를 반대한 것은 그와 같은 문맥에서만 이해하기 어렵다. 단박에 혁파할 수 없다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불교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명칭가곡과 불서의 수용에서조차 부왕과 보조를 같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내보였던 세종이 유신들의 불교 비판에 대해 이와 같이 적극적인 논리를 개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명칭가곡 수용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모르되, 그러

40) 『조선왕조실록』 세종 2년 6월 1일(무술).

지 못한 유신들의 약점을 세종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불교 수용의 논리를 적극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의 불교에 대한 생각은 새로 사찰을 창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세종은 기왕에 도입된 명칭가곡을 명나라 사신이 드나드는 지역의 사찰뿐 아니라 서울과 각 도의 사찰에까지 거둬 확대 보급하고,⁴¹⁾ 승선(僧選)·승직(僧職)의 법을 없애고 젊은 중이 사찰 주인이 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의정부의 거둬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⁴²⁾ 그뿐 아니라 사찰에서 금을 쓰는 일과 홍천사 경찬회를 혁파해야 한다는 의정부의 건의도 묵살한다.⁴³⁾ 명칭가곡과 불서의 수용, 그에 따른 불교에 대한 배려가 사대 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데 동의했던 유신(儒臣)들은 세종의 이와 같은 불교 정책에 대해 이제는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윤상(尹祥)이 주도하여 올린 성균관벽불소(成均館闢佛疏)⁴⁴⁾는 불교가 강상(綱常)의 윤리에 어긋나는 도를 가르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유신(儒臣)들의 불교에 대한 입장이 어떠했는지 짐작케 한다.

그러나 유신들의 입장과는 달리 세종은 불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세종의 불교에 대한 생각은 홍천사 경찬회와 관련한 정인지(鄭麟趾)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봉장(封章)을 받은 것이 많았고, 나는 이미 양무제(梁武帝)가 되었다. 이 일을 정지하기를 명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나, 내가 능히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못하고 그 글을 불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좇지 못하겠으며, 또 구니(丘尼)가 궁중에 나들면서 궁주(宮主)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여도 금지하지 못한 것은 나의 과실이다. 대저 임금의 허물을 엮고 찌는 것은 소유(小儒)들의 짓이다. 그 부모

41) 『조선왕조실록』 세종 16년 5월 25일(신축).

42) 『조선왕조실록』 세종 2년 7월 9일(신묘).

43) 『조선왕조실록』 세종 23년 12월 2일(갑오).

44)尹祥, 『別洞先生集』 권2.

들은 집에서 염불하고 경을 읽어도 그 아들이 간하여 그치게 못하면서, 조정에 와서는 남이 상소함을 인하여 임금의 허물을 꾸미는 것이 옳은가.”

하니,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신하의 간하는 말이 진실로 옳으면 그 옳은 것만 취할 뿐, 집에서 하는 일을 어찌 죽히 논하오리까.”

하였으나, 임금이 마침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⁴⁵⁾

세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중이 되는 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의정부의 상소에 의하면, 조선 초기부터 중이 되려면 정전(丁錢)을 바치고 도첩(度牒)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존재했지만 이 법을 어기고 승려가 되는 자가 늘어났고, 따라서 병역을 포함한 부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⁴⁶⁾ 부역자 수의 감소는 국가 경영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만 세종은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의정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세종이 불교에 대한 태도나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다. 의정부의 건의 또한 승려가 되는 길을 차단하자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승려가 되는 길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불교는 혁파하기 어렵다. 세종은 거듭되는 반대 의견을 묵살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궁궐 내에 새로운 불당(佛堂)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불교 수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많은 유신들의 반대에 대해 세종은 역대 제왕들도 완전히 없애지 못한 불교를 자신이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며, 또 조종(祖宗)을 기리고 효심을 발하여 불당(佛堂)을 짓는 것이라는 논리로써 불당 설치를 반대하는 유신(儒臣)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⁴⁷⁾

45) 『조선왕조실록』 세종 23년 12월 9일(신축).

46) 『조선왕조실록』 세종 24년 2월 15일(병오).

47) 『조선왕조실록』 세종 30년 7월 18일(임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보상절을 펴내게 하고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지은 것도 불교를 갑자기 모두 혁파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태조를 비롯한 왕실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제례를 올리거나 그들의 명복을 비는 데 그들이 익숙한 종교와 음악을 배제하는 것이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는 유가적 통치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세종의 논리를 정면에서 거둬 반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세종은 불교에 대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소유(小儒)들이나 하는 짓”으로 몰아세움으로써 당대 유신들의 비판에 대응한다. 그런데 불교 정책에 대한 유신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세종의 논리는 비단 불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불교를 갑자기 모두 혁파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상황은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신앙)에서도 두루 적용되는 것이었다.

물론 세종이 유가적 통치 원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소유(小儒)와 대유(大儒)를 구분하는 인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종교든 그것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이 바로 대유(大儒)가 지향해야 태도이기 때문이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밝혀 놓은 유가(儒家)의 역할이란 당대의 조건에 맞는 통치의 원리와 방식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실적 조건이 다양한 종교, 소유(小儒)들이 이단(異端)으로 지목하고 배척하고자만 하는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한 순간에 혁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되 그 모두를 포용하는 통치 원리나 방식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세종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의 생각은 따지고 보면 불교에 대해 한층 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태종 또한 내면으로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명나라의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서와 명칭가곡을 수용하고 제한적 수용의 안을 제시하고 또 전국의 사찰에까지 확대,

보급하는 데 대해 아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다. 다양한 종교(사상)를 포용할 때 그 나라는 대국(大國)의 지위와 면모를 갖출 수 있다. 명나라 또한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학을 장려하는 한편으로 불교와 도교 등 이단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종교(사상)를 포용하는 방향에서 통치의 원리와 방식을 마련해 갔던 것이다. 조선의 건국 주체들 또한 새 나라가 소국의 지위에 머무르기보다 명나라와 같은 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싶어 했을 것이다. 태종의 한림별곡(翰林別曲)에 대한 관심은 그런 점에서 새로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육(酒肉)을 예문관(藝文館)에 내려 주었으니, 관관(館官)이 잿[松子]을 바쳤기 때문이다. 임금이 주육을 내려 주고 이어서 명하였다.
“너희들은 한림별곡(翰林別曲)을 창(唱)하면서 즐기라.”⁴⁸⁾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림별곡은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우면서도 거대한 세계를 그려 보인” 노래로서 “그 텍스트에는 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무 통합, 유를 중심으로 하는 도·무의 통합, 화를 중심으로 하는 화·이의 통합, 남조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조의 통합 등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림별곡의 세계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통합적 공존의 세계”라 할 수 있다.⁴⁹⁾ 따라서 태종이 예문관 관료들에게 이 노래를 즐겨 부르도록 한 것은 그 역시 조선이 대국의 지위를 갖는 국가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했을 수 있는 것이다.⁵⁰⁾ 다만 이 시기에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는 요동

48) 『조선왕조실록』 태종 13년 7월 18(을미).

49) 인용한 결론적인 진술은 임주탁, 『강화 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새문사, 2004), 서문에서 가져왔고,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논의는 이 책의 142~232쪽을 참조했다.

50) 권근(權近)이 상대별곡(霜臺別曲)을 지은 시기는 1399~1409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지만, 필자는 그 시기가 태종대 이전이었으리라 추정한다. 정도전이 지은 신도가(新都歌)에도 조선이 대국의 지위를 가지는 나라로 거듭 나고자 하는 의도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나라가 수도를 북경으로 옮겨 조선과의 물리적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명칭가곡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유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림별곡은 유신들에게 새로운 주목을 받는다.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유신이 중심이 되어 포용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일정하게 공감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영(柳穎)이 구월산별곡(九月山別曲)(세종 5년, 1423)을 짓고, 변계량(卞季良)이 화산별곡(華山別曲)(세종 7년, 1425)을 짓고, 예조에서 가성덕(歌聖德)·축성수(祝聖壽)(세종 11년, 1429)와 연형제곡(宴兄弟曲)(세종 14년, 1432)를 찬진(撰進)하고, 승려인 기화(己和)가 미타찬(彌陀讚)·안양찬(安養讚)·미타경찬(彌陀慶讚)을 짓고 의상화상(義相和尚)이 서방가(西方歌)를 짓는 등⁵¹⁾ 세종대에 한림별곡의 형식을 차용한 노래가 다량으로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림별곡이 다양한 종교(사상)를 포용하는 의미를 함축한 노래 형식이고 세종의 생각이 그러한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수용이 과정상으로는 사대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국가적 위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⁵²⁾

이단으로 지목된 종교(사상)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하는 방향에서 국

가 함축되어 있는 바, 그 의도에 권근 또한 공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태종은 정도전 등의 생각에 왕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신하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조선이 대국의 지위를 갖춘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51) 조선 초기의 이른바 경기체가 작품 현황은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지식산업사, 1985), 178~192쪽; 金承燦·權斗煥 편, 『古典詩歌論』(韓國放送通信大學, 1987), 173~195쪽; 朴京珠, 『景幾體歌研究』(이회, 1996) 등에 일별되어 있다.

52) 이러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이후 경기체가 작품이 간헐적으로 지어지는 까닭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질서 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명나라의 유신(또는 한림원)에게도 공통된 과제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명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특정한 종교(사상)를 배제하지 않은 만큼 그 과제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세종 7년(1425), 세종 15년(1432) 명나라 사신이 한림별곡을 거둬 베껴간 사실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

김을현(金乙賢)을 보내어 두 사신에게 석등잔(石燈盞) 각 2별[事]을 주고, 윤봉이 한림별곡(翰林別曲)을 구하므로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이를 등사하여 주게 하였다.⁵³⁾

임금이 왕세자와 문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창성(昌盛)·이상(李祥) 두 사신에게 송별연을 열었다. 연회가 파할 무렵에 창성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사신으로 온 것이 여러 번이니 말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한림원(翰林院)은 곧 귀국(貴國)의 승정원으로서, 다 유림(儒林)이 모이는 관사(官司)입니다. 대체로 유생(儒生)이 다 한소(寒素)한 것은 천하가 일반입니다.”

하고, 드디어 한림별곡(翰林別曲)을 써 가지고 돌아갔다.⁵⁴⁾

명나라는 선종대(宣宗代, 1425~1435)에 이르러 불교에 대한 정책 기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 듯하다. 선종은 태종이나 인종(仁宗)처럼 불교를 흑신(惑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⁵⁵⁾ 바로 이 시기에 한림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신들의 역할 비중이 높아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윤

53) 『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 3월 3일(계유).

54) 『조선왕조실록』 세종 15년 11월 14일(계사).

55) 선종을 이어 즉위한 영종(英宗, 즉위 1435~1449)은 홍무구제(洪武舊制)를 모두 회복함으로써 선종대의 변화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것으로 보인다. 『釋鑑稽古略續集』(CBETA 電子佛典 Vol.18); 『古今圖書集成 釋教部語彙考』(CBETA Vol.6) 참조.

붕과 창성, 이상 등이 한림별곡을 베껴가고자 한 것도 그 이면에는 유신 중심의 국가 질서 체계 수립 문제가 명나라에서도 긴요했던 사정이 가로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명칭가곡의 수용이 이단으로 지목되기도 한 종교(사상)와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유가적 통치 원리와 방식을 중심으로 포용하는 사상을 담은 노래 형식에 주목하고 그 형식에 맞는 노래의 제작에 기틀을 마련해 주었던 셈이다.

2. 향악의 재인식과 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의 제작

명칭가곡의 수용에서 세종이 유신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었던 논리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의 신앙을 단박에 바꿀 수 없다는 현실론이었다. 그런 논리를 세종은 음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한다. 조선 초기 음악 정비 과정에서 향악의 계승 문제가 대두된 것은 다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종 9년의 일이다.

아악(雅樂)과 전악(典樂)의 천전법(遷轉法)을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아악(雅樂)은 종묘(宗廟)에 사용하므로 그 일이 매우 중한데, 공인(工人)이 거관(去官)하면 7품에 그치고, 전악(典樂)은 조회(朝會)와 연향(燕享)에 사용하는데, 도리어 5품으로 거관(去官)할 수 있으니, 같은 악공(樂工)인데도 직임(職任)을 상주는 것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원컨대, 아악을 전악이 거관하는 예(例)와 같도록 하여 한 도목(都目)을 사용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일렀다.

“예악(禮樂)은 중한 일인데, 우리 동방(東方)은 아직도 옛 습관을 따라 종묘에는 아악을 쓰고, 조회에는 전악을 쓰고, 연향에는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번갈아 연주하므로, 난잡하고 절차가 없으니 어찌 예악이라 이르겠는가? 아악은 곧 당악이니, 참작 개정하여 종묘에도 쓰고 조회와 연향에도 쓰는 것이 옳다. 어찌 일에 따라 그 악(樂)을 다르게 할

수 있겠느냐?”
 황희(黃喜)가 대답하기를,
 “향악을 쓴 지 오래이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그 잘못된 것을 안다면, 오랜 습관에 젖어 고치지 않는 것이 옳겠느냐?”
 하였다. 좌대언 이조(李)가 아뢰기를,
 “신이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서 보니, 봉천문(奉天門)에 항상 아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중국의 법을 준용(遵用)하는 것이 마땅하다.”⁵⁶⁾

아악이 곧 당악이라거나 일에 따라 악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태종의 판단은 역사적 실제와는 사뭇 다르다. 향악은 고대 주나라 때부터 사용한 음악이기 때문이다.⁵⁷⁾ 그런데도 태종은 황희(黃喜)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향악은 배제하고 당악만을 쓸 것을 명한다.

그러나 명칭가곡의 수용이 이루어진 이후 향악에 대한 태도는 달라진다. 명칭가곡 수용 과정에서 진작과 같은 속악⁵⁸⁾에 주목한 것이 태도 변화에 일조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명칭가곡 수용과 불교에 대한 정책 기조를 공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개발한 논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변화는 세종대에 이르러 분명하게 나타났다. 태종은 모든 공식적 연행에 아악만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세종은 태종과는 사뭇 다른 생각을 드러낸다. 다음 두 기록은 세종의 향악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러한 생각의 바탕에 어떤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지 보

56) 『조선왕조실록』 태종 9년 4월 7일(기묘).

57) 『시경』의 국풍은 본디 향악이다. 특히 주남, 소남 등의 노래는 주나라 왕실이 중원의 주인으로 진출하기 이전부터 토착해서 살던 사람들의 음악에 맞춰 지은 노래다. 말하자면 발생적으로 토박이들의 음악이었던 것이다.

58) 속악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당악에 기원하는지 향악에 기원하는지 알 수 없지만, 향악 계통의 음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양태순,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이회문화사, 1997) 참조.

여준다.

임금이 이조 판서 허조에게 이르기를,

“《시경(詩經)》에 ‘(笙(笙)을 부는) 사이사이에 어려(魚麗)를 노래한다.’ 하였고 《서경(書經)》에 ‘笙(笙)과 용(鏞)을 서로 교대하여 연주한다.’고 하였으니 당상악(堂上樂)과 당하악(堂下樂)을 번갈아 연주하는 것이 명백한데, 지금은 일시에 함께 연주하니,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는 본디 향악(鄉樂)에 익숙한데, 종묘의 제사에 당악(唐樂)을 먼저 연주하고 삼헌(三獻)할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향악을 연주하니, 조상 어른들의 평시에 들으시던 음악을 쓰는 것이 어떨지, 그것을 맹사성과 더불어 상의하라.”
하였다.⁵⁹⁾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아악(雅樂)은 본시 우리나라의 성음이 아니고 실은 중국의 성음인데,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므로 제사에 연주하여도 마땅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鄉樂)을 듣고, 죽은 뒤에는 아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떨까 한다. 하물며 아악은 중국 역대의 제작이 서로 같지 않고, 황종(黃鍾)의 소리도 또한 높고 낮은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보아 아악의 법도는 중국도 확정을 보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조회(朝會)나 하례(賀禮)에 모두 아악을 연주하려고 하나, 그 제작의 적중(適中)을 얻지 못할 것 같고, 황종(黃鍾)의 관(管)으로는 절후(節候)의 풍기(風氣) 역시 쉽게 낼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동쪽 일각에 위치하고 있어 춥고 더운 기후 풍토가 중국과 현격하게 다른데, 어찌 우리나라의 대[竹]로 황종의 관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황종의 관은 반드시 중국의 관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방금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강의하고 있고, 또 역대의 응후(應候)를 상고한 것도 한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았으나, 악기의 제도는 모두 그 정당한 것을 얻지 못하였고, 송(宋)나라 주문공(朱文公)에 이르러, 그의 문인(門人) 채원정(蔡元定)이 옛 사람들의 유제(遺制)를 참고해 악기를 만들어 내니, 문공이 잘 되었다고 이를 칭찬한 바 있다. 그 뒤에 원정

59) 『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 10월 15일(경진).

이 외방으로 쫓겨났는데, 문공이 서신을 통하여 말하기를, ‘제작한 악기의 음률이 아직 미흡하니, 그대의 귀환을 기다려서 다시 개정하자.’고 한 것으로 보아, 송나라의 악기도 또한 정당한 것은 아니며, ‘악공(樂工) 황식(黃植)이 조정에 들어와 아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니, 장적(長笛)·비파(琵琶)·장고(長鼓) 등을 사이로 넣어 가며 당상(堂上)에서 연주했다.’ 하였으니, 중국에서도 또한 향악(鄉樂)을 섞어 썼던 것이다.” 하니,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이 대답하기를, “옛 글에 이르기를, ‘축(柷)을 쳐서 시작하고, 어(敔)를 쳐서 그치는데, 사이로 생(笙)과 용(鑪)으로 연주한다.’ 하였사온즉, 사이사이로 속악(俗樂)을 연주한 것은 삼대(三代)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였다.⁶⁰⁾

당상악과 당하악의 교주, 아악과 속악의 교주 사례를 거론한 것은 결국 향악을 제례악에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종이 향악을 제례에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의 기저에는 명칭가곡과 불교 수용의 과정에서 보인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라는 논리가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아서는 향악을 듣고 향악에 익숙했던 사람이 죽어서는 귀에 익지 않은 당악을 들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은 불교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꿀 때 제시했던 논리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명칭가곡의 수용은 결과적으로 향악(또는 속악)을 국가의 공식 행사에서 즐겨 연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고히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는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제작될 수 없는 노래 가운데 하나다. 용비어천가의 음악적 기반이 속악(향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칭가곡의 수용은 용비어천가를 제작하는 음악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만이 아니라 그 노랫말을 제작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에서 명칭가곡이 제작되기 이전에 신승전이 먼저 제작되었는데, 신승전에 등장하는 신승들은 모두 명칭가곡

60)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 9월 11일(기유).

에서 열거된 부처 화신들이기도 하다. 이 신승전의 서문에서 명나라 태종은 신승전을 지어 반포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공행(功行)이 탁월한 명승(名僧)이 신(神)이 되는 까닭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⁶¹⁾ 비록 태종실록을 편찬한 사관은 “신승전이란 한(漢)나라 이래로 여러 괴담(怪誕)한 중의 요망한 말과 궤이(詭異)한 행적을 모은 것”이라고 폄하했지만, 용비어천가의 제작진은 그 서문에 밝힌 명나라 태종의 발상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용비어천가는 보통의 경험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적을 바탕으로 조선 왕조를 열었던 육조(六朝)가 성인(聖人)이 되는 까닭을 알 수 있게 만든 노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조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곧 조선 건국이 필연적 당위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승전을 외며 공행이 탁월한 명승이 신(神)이 되는 까닭을 터득하고 명칭가곡을 부르며 신승을 비롯한 부처의 현신들을 기리도록 한 것이나 6조의 사적을 노래로 부르며 6조가 성인이 되는 까닭을 터득하고 그들을 기리도록 한 것은 그 취지나 발상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

61) 신승전이 이루어졌다. 임금이 옛날 저명한 명승들 가운데 공행이 탁월한 자를 모아 한 편의 책을 만들고 신승전이라 이름 붙였다. 이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친히 서문을 지었는데 “신승이란 신 같은 조화가 나타나며 그 무리 가운데 아주 빼어난 자이다. 그러나 전(傳)이 있어도 경전에 흠어져 있는 듯하여 보는 이가 삼장의 글을 찾아 구해 보고자 해도 너무 널리 흠어져 있어 두루 구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그들이 신(神)이 되는 까닭을 궁리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 전(傳)들을 열람하고 뽑아 9권으로 묶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찾는 데 힘쓰지 않고 한 번에 보고 그 이치를 터득하기를 마치 보물 창고에 들어가 아름다움 것을 다 집는 것처럼 하도록 한다.”라고 했다. 마침내 판목에 새겨 전하여 그들의 종적을 천지간에 밝게 드러나게 하고, 사람마다 모두 신승이 신이 되는 까닭을 징험할 수 있게 하였다. 책의 머리에 글을 써서 그 대의를 개괄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神僧傳成. 上嘗閱釋氏書, 採往昔名僧功行之超卓者, 輯爲一編, 命神僧傳. 至是成, 親製序冠之曰: 神僧者神化萬變而超乎其類者也. 然皆有傳散見經典, 觀者猝欲考求三藏之文, 宏博浩汗, 未能周徧, 是以世多不能盡知, 而亦莫窮其所以爲神也. 故, 繙閱采輯其傳, 總爲九卷, 使觀者不必用力於搜求, 一覽而盡得之, 如入寶藏, 而衆美畢舉, 遂用刻梓以傳, 昭著其迹於天地間, 使人皆知神僧之所以爲神者, 有可徵也. 書此于編首, 概見其大意云. 爾命錄梓以傳.) 『太宗文皇帝實錄』永樂 15年 1月 癸巳.

므로 신승전과 명칭가곡의 수용은 용비어천가 노랫말의 제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객관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유학자들이 신이한 사적을 노래로 수용하여 드러낸 까닭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⁶²⁾

물론 이와 같은 영향이 한층 더 두드러진 곳은 월인천강지곡의 제작에서다.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바탕으로 하여 석가세존 곧 부처의 행적을 노래로 만든 것이다. 부처 현신의 이름만을 열거하는 명칭가곡과는 노랫말의 성격이 사뭇 다르지만, 국왕이 불서를 바탕으로 하여 불교적인 노래를 지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유가적 통치 원리와 방식을 천명했던 명나라에서 불서를 바탕으로 하는 불곡을 지었고 그 결과를 조선이 수용한 마당에 조선의 국왕이 그와 같은 행위를 따라 하는 것이 문제시 될 수는 없다. 유신들이야 당연히 반발하지만 그들이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불교에 대한 믿음이 효의 실천이라는 논리를 부정하기 어려운 이상, 반발은 현실적 기반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부처가 성이 되고 신이 되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이다. 달이 모든 강에 골고루 빛을 비추듯, 성이고 신인 부처는 모든 인민들에게 골고루 자혜로운 빛을 내려준다. 그 내용을 한문을 깨친 지식인들이야 불서를 통해 익히 알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인민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명칭가곡을 만들게 한 명나라 태종의 생각이기도 했다. 명나라 태종은 맹목적으로 부처 현실들의 이름만을 암송하게 할 요량으로 명칭가곡을 지었지만, 조선의 세종은 인민들 또한 부처의 신이한 행적을 노래를 통해 알 수 있게 하였다. ‘문헌적 근거’⁶³⁾를 아울러 알게 한 것이다.

62) 용비어천가는 세계 질서의 기본적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노래이므로 그 사상의 핵심은 유가적 사유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용비어천가는 한림별곡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 할 것이다.

63) 명칭가곡의 ‘문헌적 근거’는 신승전과 같은 노래 바깥의 불서로 정리되었다. 월

월인천강지곡이 담고 있는 신이한 이야기가 진실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용비어천가의 신이한 이야기 또한 진실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둘은 모두 인간이 신이 되고 성이 되는 까닭을 신이한 행적으로써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의 수용과 전승의 바탕이 되는 ‘믿음 구조’⁶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그 음악적 바탕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음악적 바탕이 명칭가곡의 음악이거나 명칭가곡의 수용 과정에서 주목한 진작 계통의 속악이었을지도 모른다.⁶⁵⁾ 명칭가곡의 수용 과정에서 진작이 주목된 까닭은 무엇보다 그 음악적 특성이 명칭가곡을 엮어 부르는 음악에 가장 가깝거나 잘 어울린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명칭가곡은 명나라에서도 대중적 전파를 위해 속악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인 만큼 조선에서 알고 있던 아악이나 당악과는 사뭇 다른 속악, 향악 계통의 속악이었을 개연성이 오히려 높다. 하지만 이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인천강지곡의 제작에 명칭가곡의 수용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인천강지곡도 그에 사용하는 문헌적 근거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노래 속에 포함시켰다.

- 64)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의 진실성은 믿음에 바탕을 둔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들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신이한 이야기에 대해 사실적인 이야기를 대할 때와 달리 믿음이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신뢰하는 작용을 하는 기제를 ‘믿음 구조’라고 부르고자 한다.
- 65) 용비어천가의 바탕이 된 음악이 진작이라는 주장은 李惠求, 『韓國音樂序說』(서울대출판부, 1979), 181~214쪽; 양태순, 「韓國古典詩歌와 樂曲과의 관계」, 『論文集』 17(淸州師範大學, 1986), 19~21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許俊會, 「古典詩歌와 樂曲과의 關係-朝鮮初期를 中心으로-」, 『목덕어문』 3(동국대 국어교육과, 1989), 170~171쪽에서는 월인천강지곡의 악곡 또한 진작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피력된 바 있다. 하지만 꼭 같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태종대에서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명칭가곡의 수용이 세종대의 불교에 대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상에 바탕을 둔 시가 작품의 제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두에서 제기했던 궁금증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우선,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정책 기조를 천명했던 조선이 불교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사상)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더 쫓아내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종은 명칭가곡의 불가피한 수용의 과정에서 이단으로 지목하여 불교 등을 배척하는 유신의 논리에 반박하는 현실 논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 현실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유신들이 마련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유신들이 새로운 논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조선은 불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신앙)를 왕실에서부터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儒生)들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유신(儒臣)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에 불교, 도교 등과 관련되는 제도와 의식은 가장 먼저 청산의 대상이 되었으리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배제는 포용보다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세종은 명칭가곡 수용 과정을 통해 바로 그 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명칭가곡이 비록 명나라의 압력에 의해 수용된 것이지만 이를 매개로 국가적 통합을 이루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 세종대에 한림별곡의 형식을 차용한 노래들이 집중적으로 창작된 까닭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기체가(景幾體歌)로 분류되어온 한림별곡의 형식을 차용한 노래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왜 그런 형식의 노래가 세종대에 집중되어 창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연구된 바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그 까닭을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만큼 본격적인 연구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한림별곡은 유가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사상의 통합적 공존의 질서를 추구하는 사유를 담아낸 노래 형식이다. 명칭가곡의 수용은 세종의 불교를 비롯한 이단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그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던 유신(儒臣)들은 한림별곡에 새로이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노래를 지은 까닭도 좀 더 꿰뚫히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은 유가적 합리주의(合理主義)로써는 납득할 수 없는 사적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사적들은 유가적 이념을 통치 원리로 수용한 나라의 역사(正史)에서는 잘 기록되지 않았으며, 기록되었더라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런데도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할아버지의 사적들을 수집하여 ‘중원의 문화 대국’⁶⁶⁾의 역대 사적과 부합함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였다. 6조가 성인이 되는 까닭을 내보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명칭가곡과 함께 수용된 신승전의 서문에 밝힌 “공행이 탁월한 명승이 신(神)이 되는 까닭을 알게 한다.”라는 목적과 맥이 닿아 있음이 분명하다. 용비어천가에서 육룡 곧 6조는 성인이자 신(神)이기도 한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의 주인공 부처 또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성이 되고 신이 되었다. 월인천강지곡을 암송하면서 부처가 성이 되고 신이 되는 까닭을 깨치는 사람, 곧 월인천강지곡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용비어천가의 주인공들도 성이 되고 신이 된다고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월인천강지곡은 그 향유 주체들로 하여금 용비어천가가 진실성을 담지한 노래로 수용하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의 음악적 바탕이 진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이는 기왕의 음악적 연구에

66) 이것이 중국(中國)의 개념이었다고 생각한다.

서 이 두 노래의 악곡을 진작의 그것과 비교하고자 했던 시도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작은 명칭가곡의 음악과 교주(交奏)하기 위해 선택된 속악인 만큼 그 음악이 바로 명칭가곡의 음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 다만 명칭가곡의 바탕이 된 중국의 속악이 무엇인지 천착하면 그 상관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은 이 연구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명칭가곡과 불서들의 수용이 세종대에 통치사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문학 문화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게 된 셈이다. 문화의 흐름, 그 속에서의 문학 특히 시가 형식의 발생과 소멸은 단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이 세종대와 그 전후의 시기에 복잡다기했던 흐름을 꿰뚫히게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古今圖書集成 釋教部語彙考』(CBETA Vol.6)
- 『明史』 上中下(標點校勘 영인본)(아름출판사, 1995)
- 『明實錄·太祖實錄-太宗實錄』(영인본) 1~14, 英美書籍, 1990.
- 『別洞先生集』(尹祥)
- 『釋鑑稽古略續集』(CBETA 電子佛典 Vol.18)
- 『釋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廣陵古籍刻印社, 2000, 동국대도서관 소장)
-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頻伽精舍, 연대미상, 계명대도서관 소장)
- 『朝鮮王朝實錄』(太祖~世宗)(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 주식회사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 金承燦·權斗煥 편, 『古典詩歌論』, 韓國放送通信大學, 1987, 173~195쪽.
- 朴京珠, 『景幾體歌研究』, 이회, 1996.
- 양태순, 「韓國古典詩歌와 樂曲과의 關係」, 『論文集』 17, 淸州師範大學, 1986, 9~30쪽.
- 양태순,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 이회문화사, 1997.
- 李惠求, 『韓國音樂序說』, 서울대출판부, 1979, 181~214쪽.
- 임주탁, 『강화 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 鄭亨愚,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의 輸入과 그 普及·誦習問題」, 『東方學志』 54-56, 연세대, 1987, 717~734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5, 178~192쪽.
- 許俊會, 「古典詩歌와 樂曲과의 關係-朝鮮初期를 中心으로-」, 『목석어문』 3, 동국대 국어교육과, 1989, 149~172쪽.

<Abstract>

On Acceptance of the *Mingcheng-gequ* in Joseon Korea

Yim, Ju-Tak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how the *Mingcheng-gequ* (名稱歌曲), which had been created by King Taizong (太宗), the second of Ming China (明), in 1417, was accepted and what influences there were in Joseon Korea (朝鮮). The *Mingcheng-gequ* was a sort of Buddhist music, but different from other ones. Its texts were composed of all the names of Buddha who had been appeared in the world with different names by the times. Ming China could not exercise religious influences to Joseon Korea because of its toadyism toward it, but by giving many copies of *Mingcheng-gequ* to Joseon Korea, it did so. It gave King Taejong (太宗), the third of Joseon Korea, troublesome problems because he had declared to his people that he would cherish Confucianism by laying restraint on Buddhism. He, however, could not say no. Most Confucian bureaucratic governors could not say no too because they all had cherished worshipping Ming China much more than laying restraint on Buddhism.

Joseon Korea under King Sejong (世宗) regime, accepted all the copies of *Mingcheng-gequ* and spread to most temples in Seoul and other provinces. By here, there were several phases through which he cultivated several logics against most Confucianists. An important logic was that if they could not reject *Mingcheng-gequ* nor keep the

people from all the teachings of Buddhism, they had to invent a new way of reign, the way which include all of them. Owing to this logic, many new songs of different forms were made even by Confucianists under King Sejong regime. Through this paper, we know why most new versions of *Hallim-byeolgok* (翰林別曲), like *Sangdae-byeolgok* (霜臺別曲), *Hwasan-byeolgok* (華山別曲), and etc. were created in the period, why Confucianists at that times participated in creating such new songs and *Yongbieocheon-ga* (龍飛御天歌), and why and how King Sejong made a version of Buddhist song like *Worincheongangjigok* (月印千江之曲).

Key Words : *Mingcheng-gequ*, Buddhist music, *Hallim-byeolgok*, *Yongbieocheon-ga*, *Worincheongangjigok*, Sejong